

수변문화쉼터 위탁 동의안

# 심사보고서

|          |    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<br>번호 | 540 |
|----------|-----|

2025. 6. 11.  
행정안전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: 2025. 5. 30. 강남구청장(치수과)

나. 상정의결

- 제328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(2025. 6. 11.)  
“원안가결”

## 2. 제안이유(제안설명: 안전교통국장)

양재천에 조성되는 수변문화쉼터의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다양한 문화공연 운영을 위해 문화예술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강남문화재단에 운영 사무를 위탁코자 하며,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27조(사업의 대행 등)에 따라 강남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가. 위탁 사무명 : 수변문화쉼터 시설관리 및 운영

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
○ 추진 근거
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(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)
-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(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)
-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변문화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(관리·운영)
-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7조(사업의 대행 등)

○ 추진 필요성

- 수변문화쉼터(가칭)는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이자, 공연·전시·행사 등 다양한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조성코자 하며, 이를 위해 지역 문화 활성화와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에 다년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강남문화재단에 수변문화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여, 안정적이고 원활한 위탁 운영을 추진코자 함.

다. 위탁기간 : 2025. 7. 1. ~ 2025. 12. 31. (6개월)

라. 위탁기관 : 강남문화재단

마. 위탁자 선정방식 : 수의계약

바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(1) 소요예산 : 413,226천원(2025년 1차 추가경정예산)

(2) 산출내역

| 구 분          | 소 계         | 비 고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|
| 307-05 민간위탁금 | 413,226,000 |   |
| 1. 인건비       | 44,749,000  | - 인건비(직원 2명) 27,983,000원<br>- 기본급, 제수당, 보험료 등 16,766,000원   |
| 2. 운영경비      | 232,637,000 | - 일반수용비(사무, 청소용품 등) 26,676,000원<br>- 공공요금(전화, 전기, 수도 등) 43,421,000원<br>- 시설관리용역비(관리2, 미화2) 103,930,000원<br>- 관서운영비, 지급수수료 등 58,610,000원 |
| 3. 행사운영비     | 135,840,000 | - 공연(총12회×2팀) 72,000,000원<br>- 강연비(12회) 12,000,000원<br>- 행사운영경비(설비대여 포함) 51,840,000원  |

## 5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: 이상민)

### 가. 주요내용 검토

- 제출된 동의안 및 관련자료를 살펴보면,
  - 향후 위탁기간을 6개월 간(2025. 7. 1. ~ 2025. 12. 31.)으로 하고, 위탁사무의 내용으로는
    - (1) 위탁대상시설 관리 및 운영
    - (2) 시설 및 자산물품 운영 및 유지관리
    - (3) 쉼터 문화공연 기획·운영 및 홍보
    - (4)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제경비 사용 및 민원사항 처리
    - (5)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임.
- 그 밖에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른 사항을 적합하게 기재한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였음.
- 다만, 공유재산법 제27조 제2항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관리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

면서, 같은 항 단서에서는 계약의 목적·성질·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,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5 제1항에서는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 위탁할 수 있는 경우를 각 호로 열거하고 있는바, 해당 규정은 행정재산을 관리 위탁하는 경우 일반입찰 원칙에 대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므로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·적용해야 함.

- 이 사안과 관련하여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9조의5 제1항에서는 수의 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 위탁할 수 있는 경우 중 하나로 “관리 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, 기술 보유 정도, 책임 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” (제2호)를 규정하고 있고, 그 위임에 따른 「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」 별표 4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<sup>1)</sup>를 규정하고 있는 데 이중 어느 사항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.
- 또한 동의안의 산출내역을 살펴보면, 인건비와 운영경비 등 경상비 비중이 과도하게 높고 사업비 비율이 미미함. 이는 사업의 성과 및 효율성을 낮추는 것으로 보이며, 사업의 본질과는 다르게 시설 유지관리

1) 나. 수의에 의한 방식

1) 수의계약 대상

①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

② 영 제19조의5제1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도록 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.

- 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자가 아니면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

- 특수한 장비를 보유한 자가 아니면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

-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·운영을 위해 해당지역 마을회 등 마을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

- 「지역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제78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특수상황지역, 성장촉진지역, 농산어촌,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을 해당 마을법인이나 마을단체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

③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

사업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음. 또한 시설관리 용역비는 관리위탁 사무가 아닌 용역에<sup>2)</sup> 포함시켜 이중 위탁구조가 될 수 있음. 이러한 경우 운영의 효율성과 통제성이 저하되어 이에 대한 부서의 설명이 필요함. 마지막으로 행사운영비와 관련된 항목들의 산출근거가 불명확하여 예산편성의 투명성이 저하됨.

## 나. 종합의견

- 수변문화쉼터 시설 및 자산물품 운영 및 유지관리와 더불어 문화 공연 기획·운영 및 홍보를 위탁하기 위하여 구의회 동의를 받기 위한 안건으로 수변문화 공간의 활용을 통해 주민의 여가·문화 활동을 증진하고, 지역 내 관광 및 문화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, 그 기본 방향에는 공감할 수 있음.
- 다만,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동의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.
  - 첫째, 공공기관이 ‘카페’와 같은 민간영역의 영리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이를 민간에 위탁하는 방식에 대하여 공공성의 관점에서 타당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. 특히, 해당 시설의 설치 목적이 문화·여가공간 조성에 있다면, 단순한 상업시설 운영보다는 전망대 등 순수 공익 기능으로의 활용 가능성 또한 함께 고려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.
  - 둘째, ‘카페 운영’이 불가피하다면, 운영방식은 공익성과 지역사회

2) 2024 공유재산 업무편람. 142p

시설관리 기능 등 민간참여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기능은 아웃소싱(용역)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관리위탁 적용대상이 아님

▶ 관리위탁 제도는 효율적인 행정을 실현하고 공공서비스에 경쟁환경을 확보함으로써 효율적·효과적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, 단순히 청사관리, 청소노무, 보안업무 또는 특정 시설의 전문적인 관리 중 특별한 기술이 부분적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아웃소싱(용역)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음

기여 측면에서 설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. 예를 들어, 카페의 위탁운영을 노인단체, 장애인단체 등 사회적 약자와 연계하거나, 사회적 기업을 참여 주체로 설정하는 등의 공공적 운영모델을 검토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, 이러한 사례는 타 지자체의 유사 사례에서도 다수 적용되고 있으며, 지역 내 수용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.

- 셋째, 최근 자영업자의 폐업률 증가가 역대 최고치에 달했다<sup>3)</sup>는 점 등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, 공공이 직접 민간영역에 진입하는 데 따른 지역 소상공인과의 갈등 우려가 있으므로, 지역 상권과의 상생 방안 마련이 포함되어야 할 것임
  - 마지막으로 제326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변 문화쉼터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 당시 논의되었던 관할지역 내 음악동아리 등 지역문화예술단체의 자발적 참여 등으로 구성할 수 있는 음악 공연의 방법 및 공연 예산 편성 시 음악 공연과 전시회 등에 대한 구체적 운영방법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였는지 부서의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
- 이상과 같은 검토를 바탕으로, 동의안은 수익계약의 적정성 여부, 공익성, 지역사회 수용성, 그리고 사업의 타당성을 중심으로 심도있는 논의 후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됨.

---

3) 폐업 자영업자 98.6만명 역대 최대...2030 사장님 29만명 망했다  
(출처 : <https://www.sedaily.com/NewsView/2DI9RJ4BE6>)

## 참고 관계법령 발췌서

### □ 공유재산법

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(이하 “관리위탁”이라 한다)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계약의 목적·성질·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.

### □ 공유재산법 시행령

제19조의5(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)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.

1.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
  2.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, 기술 보유 정도,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
  3.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탁받으려는 자의 관리위탁 수행 능력, 사업수행계획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.

6. 질의 및 답변 요지: “생략”

7. 토론 요지: “생략”

8. 심사 결과: “원안가결”

9. 소수의견의 요지: “없음”

10. 기타 사항: “없음”

붙임 수변문화쉼터 위탁 동의안. 끝.

# 수변문화쉼터 위탁 동의안

|          |    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<br>번호 | 540 |
|----------|-----|

제출연월일 : 2025. 5. 30.  
제출자 : 강남구청장  
제출부서 : 치수과

## 1. 제안이유

양재천에 조성되는 수변문화쉼터의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다양한 문화공연 운영을 위해 문화예술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강남문화재단에 운영 사무를 위탁코자 하며,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27조(사업의 대행 등)에 따라 강남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 : 수변문화쉼터 시설관리 및 운영

나. 민간위탁 추진 개요

(1) 추진근거
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(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)
-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(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)
-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변문화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(관리·운영)
-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7조(사업의 대행 등)

(2) 추진 필요성

- 수변문화쉼터(가칭)는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이자, 공연·전시·행사 등 다양한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

장소로 조성코자 하며, 이를 위해 지역 문화 활성화와 문화 예술 프로그램 운영에 다년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강남 문화재단에 수변문화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여, 안정적이고 원활한 위탁 운영을 추진코자 함.

**다. 위탁대상 사무 등 위탁범위**

- (1) 위탁대상시설 관리 및 운영
- (2) 시설 및 자산물품 운영 및 유지관리
- (3) 쉼터 문화공연 기획·운영 및 홍보
- (4)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제경비 사용 및 민원사항 처리
- (5)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
**라. 위탁시설 개요(소재지, 규모, 지원시설, 위치도)**

- (1) 소재지 : 강남구 개포동 1279(양재천 우안 밀미리다리 하류)
- (2) 규 모 : 총 면적 856.16m<sup>2</sup> (가설건축물 및 실외)

| 시설명               | 면적(m <sup>2</sup> ) | 구 성(안)  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|
| 수변문화쉼터<br>(가설건축물) | 305.25              | 내부 252.77m <sup>2</sup> , 화장실 27.19m <sup>2</sup> ,<br>관리사무실 19.07m <sup>2</sup> , 실외기실 6.22m <sup>2</sup> |
| 실외                | 550.91              | 1층 야외데크 321.5m <sup>2</sup> ,<br>가설건축물 옥상 229.41m <sup>2</sup>   |

**(3) 위치도 및 조감도**



마. 위탁기간 : 2025. 7. 1. ~ 2025. 12. 31. (6개월)

바. 위탁기관 : 강남문화재단

사. 위탁자 선정방식 : 수의계약

아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(1) 소요예산 : 413,226천 원(2025년 1차 추가경정예산)

(2) 산출내역

| 구 분          | 소 계         | 비 고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|
| 307-05 민간위탁금 | 413,226,000 |   |
| 1. 인건비       | 44,749,000  | - 인건비(직원 2명) 27,983,000원<br>- 기본급, 제수당, 보험료 등 16,766,000원   |
| 2. 운영경비      | 232,637,000 | - 일반수용비(사무, 청소용품 등) 26,676,000원<br>- 공공요금(전화, 전기, 수도 등) 43,421,000원<br>- 시설관리용역비(관리2, 미화2) 103,930,000원<br>- 관서운영비, 지급수수료 등 58,610,000원 |
| 3. 행사운영비     | 135,840,000 | - 공연(총12회×2팀) 72,000,000원<br>- 강연비(12회) 12,000,000원<br>- 행사운영경비(설비대여 포함) 51,840,000원  |

### 3. 참고사항 : 관계법령

#### ○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

**제19조의5(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)**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.

1.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
2.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, 기술 보유 정도,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
3.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탁받으려는 자의 관리위탁 수행 능력, 사업수행계획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.

#### ○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
**제21조(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)** ① 출자·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 중 국가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, 비용부담의 방법·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다만,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 중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, 비용부담의 방법·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#### ○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변문화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**제4조(관리·운영)** ① 수변문화쉼터는 구청장이 관리·운영한다. 다만,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인·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시 구청장은 수변문화쉼터 관리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게 지원할 수 있다.

③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따른다.

#### ○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**제27조(사업의 대행 등)** ① 재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문화시설 운영 또는 문화진흥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, 필요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.

② 구청장은 구의회의 동의를 거쳐 구 행정사무 중 일부를 재단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,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.

